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친환경사업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3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2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친환경사업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민형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친환경사업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104조의36) ○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조달자금의 사용·관리, 사업계획의 평가와 선정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 특례내용: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채권 발행일 기준)

* 민형배의원안 2025. 9. 25. 발의(의안번호 13271)

☐ 개정안은 ①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②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가중되고 있음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

1)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2155호) 검토보고서(2024.9) 참조

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0.8~1.2℃)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하였음.

아울러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는 10년 당 0.2℃의 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파리협정²⁾의 목표인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고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음.

실제로 세계각지에서는 폭염·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인도 중부의 4월 평균 최고기온이 37.87℃로 121년만에 4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였고, 2022년 여름 파키스탄 홍수로 1,700여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30년(1991년~2020년) 연평균기온은 과거(1912년~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여름길이는 20일 증가, 겨울 길이는 22일 감소하였음. 또한, 최근 폭염 및 호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체감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로 강수령 기록이 경시되었고,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2)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비준.

열대야가 기록적이었던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평균폭염일수는 평년보다 13.4일 많은 24.0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인 자금 유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탄소중립기본법」³⁾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지원,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혹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는 달리,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 분야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다른 분야 채권 투자를 구축(驅逐)하고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정책적인 육성이나 장려가 필요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 없는 비과세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보다 귀착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함.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⁴⁾에서는 과세특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되지 않도록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